



# 보험업감독규정 일부 개정(안) 변경 예고

최 원 선임연구원

■ 금융위는 지난 8월 30일 발표된 ‘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’을 바탕으로 보험업감독규정 일부 개정(안)을 변경 예고함.

- 금융위는 9월 28일부터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및 학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보험업감독규정 개정(안)을 확정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금융위 의결을 거쳐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.

■ 이번 일부 개정(안)에는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 출시, 자기부담금 다양화, 보험료 및 보장내용 변경주기 단축이 포함됨.

-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기존 가입자가 실손의료보험을 변경·재가입 시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실손의료보험 상품만을 가입·변경할 수 있는 단독상품 출시를 의무화함.
- 의료 이용량이 적은 소비자의 기호를 반영하고 과도한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현재 판매 중인 자기부담금 10% 실손의료보험 상품에 추가하여 자기부담금 20%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함.
- 매년 변경되는 국민건강보험과 연계되는 상품 특성을 반영하여 소비자가 갈아타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보험료를 매년 변경하도록 함.
  - 단, 매년 보험료가 과다 인상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료 변동 폭이 산업평균(참조순보험요율)보다 일정 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전 신고하도록 함.
- 의료 환경 변화, 물가상승 등에 따른 소비자 선호 변화를 반영하여 보장내용을 일정기간(최대 15년)마다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함.
  - 또한 일정기간 경과 이후 상품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사전에 명확히 안내하고, 변경된 상품에 재가입 되는 조건 및 변경사항을 안내하도록 함.

(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, 금융위, 9/28)